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7 November 2016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EY CONTACTS

####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 Singapore: Country-by-country reporting guide

싱가포르 과세당국(Inland Revenue Authority)은 OECD의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프로젝트에 참여의사에 따라 싱가포르 소재의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의 전세계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국가별보고서 작성가이드를 발행하였습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경우
- 전기 연결매출액이 SGD 11.25 억(약 7.5 억 유로) 이상인 경우
- 다국적기업이 외국관할권에서 자회사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싱가포르에 소재되어 있는 기업이 최종모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기업은 이미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싱가포르에서는 별도로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소재 법인은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관련정보를 제공하면서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는 납세자의 이전가격보고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며 이전가격보고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별보고서의 자세한 제출방식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Back to top](#)

### [OECD: Five jurisdictions agree to automatic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

OECD(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브라질, 건지(Guernsey), 저지 섬(Jersey), 맨 섬(The Isle of Man) 및 라트비아에서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이하 “국가별 보고서”)의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다자과세당국간협정(이하 “MCAA”)”을 체결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OECD 발행본은 MCAA 서명국이 총 49 개국이 되었으며, 이는 OECD/G20 – BEPS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MCAA는 BEPS 프로젝트의 Action 13에 따른 새로운 이전가격 보고서 기준을 시행 가능케 하며, 국가별보고서의 자동정보교환으로 인하여 이와 더불어 다국적기업의 기업운영방식에 대하여 각 국가별 세무당국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국가별 보고서의 자동정보교환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은 매년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내 발생한 소득의 분배 및 납부세액, 기업의 경제 활동 위치의 기타 지표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관할권 내 수행하는 기업별 경제 활동에 대한 상세내용도 포함됩니다.

[Back to top](#)

### [Hong Kong: Consultation on formal transfer pricing regime](#)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6/08/tnf-germany-loan-guarantees-by-german-parent-company-for-foreign-subsidiaries.html>

홍콩 정부는 OECD의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도입에 관한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 공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에는 필수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을 포함한 기존 이전가격 규정을 홍콩에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안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Arm's Length Standard)에 따른 이전가격 규정 도입

- 이전가격 문서화(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 도입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구비의무 적용요건: (하기의 요건 중 2개이상 해당 시)
    1. 연결매출액 HKD 1 억 (약 150 억 원) 이상;
    2. 자산 HKD 1 억 (약 150 억 원) 이상;
    3. 종업원 수 100 명 이상
  - 국가별보고서 구비의무에 적용요건
    1. 연결매출액 EUR 7.5 억 (약 9,500 억 원) 이상.
- 홍콩과 조세조약(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TIEA" 포함)이 체결된 국가들과의 국가별 보고서 교환.
- 기존의 APA (Transfer pricing ruling) 규정을 법규에 제정
- 조세조약 남용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OECD 와 관련된 다국적기구(Multilateral Instrument, 이하 "다국적기구')에 가입을 통한 홍콩 조세조약의 개정
-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 및 중재방안을 입법화를 통한 조세분쟁을 완화
- 조세조약 체결국과의 조세혜택, 이전가격, 과세소득 하향조정, 고정사업장 상태, 특수관계자 도관거래, BEPS 와 관련된 판례의 자발적인 교환
- 세액공제기간을 6 년으로 연장 (기존 2 년) 및 납세자들의 외국납부세액 최소화를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개선

면제 대상인 특정 소규모 납세자들을 제외한 특수관계거래가 존재하는 홍콩 납세자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정책 문서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이전가격 규정 및 보고의무 관련 규정을 불이행 시 그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 한국-인도 조세조약 및 인도의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금년 9 월에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의 발효에 맞추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회재정부, 삼정 KPMG 와 공동으로 인도의

투자환경과 주요 조세제도, 그리고 한-인도 조세조약 주요 개정내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국제조세 및 인도세제 등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KPMG Korea / India 소속 전문가 등이 발표자로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게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행사개요

일시: 2016.12.2(월) 14:30~17:30

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30	등록
14:30~14:40	개회사
14:40~15:20	제 1 세션 - 주제: 인도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전략 - 발표: 김봉훈 (맥스틴글로벌 대표이사)
15:20~15:25	중간 휴식
15:25~16:05	제 2 세션 - 주제: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내용 및 인도진출 시 유의할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 발표: 백승목 (KPMG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16:05~16:10	중간 휴식
16:10~16:50	제 3 세션 - 주제: 인도 현지 주요 세제 및 최근 인도 세정동향 - 발표: Pardasani, Manoj (KPMG India 파트너)
16:50~17:00	중간 휴식
17:00~17:30	질의응답

참가비: 무료

### ■ 문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미정 전문연구원

(Tel: 044-414-2261, E-mail: mjkang@kipf.re.kr)

※ 사전준비관계로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석여부를 가급적 11 월 25 일(금)까지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초청장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Back to top](#)

---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